

# - 김해시 주민자치대학 운영 및 상호협력-

## 협약서

김해시복지재단, 한국지역복지아카데미, 김해시는 김해시 주민자치대학의 운영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김해시 주민자치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.

### 제2조(협약내용)

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각 기관의 법령과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력하며, 이를 위한 세부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.

1. 주민자치 활성화 및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진행
2.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자치 의무교육 시행
3. 기타 주민자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### 제3조(협력방법)

협약기관은 본 약정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기관 중 한 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호 업무협약의 책임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 제4조(신의성실의 원칙)

협약기관은 신의성실과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며,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.

### 제5조(협약기간)

- ①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, 협약 만료일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의 효력이 갱신된 것으로 협약서 본다.
- ② 협약기관은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해지할 수 있다.

### 제6조(보안유지)

협약기관은 협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정보를 상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.

### 제7조(효력발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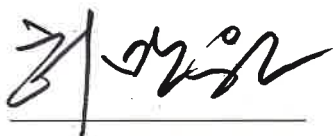
본 협약은 각 기관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10월 23일



대표이사  
허만원





이사장  
박태영





김해시장  
허성곤

